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원자력발전연료 제조·공급(정련·변환·가공)계획 변경승인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60일

신청인	상호 또는 명칭	대표자 성명
	주소	전화번호

「전기사업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 제조·공급(정련·변환·가공)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이유서 2.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